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기덕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184

발 의 년 월 일 : 2024년 10월 16일
발 의 자 : 김기덕 의원(1명)
찬 성 자 : 강석주, 김 ᆞ경, 김영철, 김형재, 남창진, 문성호, 민병주, 박칠성, 송도호, 유만희, 이용균, 이원형, 임종국, 홍국표 의원(14명)

1. 제안이유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적용범위)에서 명시하고 있는 내용과 입법체계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상 화장실 관리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립학교와 사립유치원의 건축물 면적을 수정함 (안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후단 및 같은 조 제3호 후단 중 “따른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를 각각 “따라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에 설치된 화장실 관리에 적용한다.	제2조(적용범위)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다만 사립학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보유한 학교에 한함.	2. ---------- --. ---------- ---------- ---------- 따라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
3.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유치원. 다만 사립유치원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보유한 유치원에 한함.	3. ---------- ----------. ---------- ---------- ---------- 따라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 --.

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제3호[1]에 해당하는 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2천제곱미터 → 1천제곱미터)을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으로 서울시교육청의 재정수입 순감소나 재정 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오희선
추계세제팀장	김중헌
추 계 분 석 관	이홍래

☏ 02-2180-7952
e-mail : hong1004@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

---

1)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적용범위)
① 법 제3조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그 부대시설
2. 문화 및 집회시설: 집회장, 전시장, 동·식물원
3. 의료시설: 병원, 격리병원
4. 교육연구시설: 학교, 교육원, 연구소, 도서관
5. 노유자(노인·어린이)시설: 사회복지시설, 근로복지시설
6. 수련시설: 생활권수련시설, 자연권수련시설
② 법 제3조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